# 진 료 협 약 서

김해시복지재단(이하“갑”이라 한다)과 뉴욕치과그룹(이하“을”이라 한다)은 진료협약 취지에 입각하여 상호 정보교류 및 의료서비스를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 1 조 (목적)
본 협약의 목적은 상호 정보교류 및 의료서비스를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하는데 있다.

제 2 조 (대상 및 절차) “갑”과 “을”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.
① 대상은“갑”의 임직원 및 직계가족, 기관 등록회원에 한한다.
② 감면확인 : 진료접수 시 사원증 또는 회원증 제시, 가족임을 통보한다.
제 3 조 (혜택내용)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.

* 진료혜택 : 별도첨부

제 4 조 (추가사항)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가 발생할 경우 양 실무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추가 협력한다.

제 5 조 (효력발생)
본 협약서는“갑”과“을”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2 월 2 일

| | |
|---|---|
| 김 해 시 복 지 재 단 | 뉴 욕 치 과 그 룹 |
| 이 사 장 허 성 곤 | 원 장 유 달 준 |